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6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
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활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이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전시임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시 등 유사시 병력 동원 등 병무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평시에 전시임무교육을 통한 병무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내 별도의 시간 할애 허용 등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

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전시임무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임무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효과적인 유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유관기관 수요조사 등 일련의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지표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평가지표의 합동평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취지와 일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